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64호**  
**2025년 3월 28일**  
**금요일**

| 선<br>람 | 기관의 장 |
|--------|-------|
|        |       |

**공 고**

|         |           |                                                               |           |     |
|---------|-----------|---------------------------------------------------------------|-----------|-----|
| ○ 공 고   | 제 6 7 8 호 |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총 무 과     | 2   |
| ○ 의회사무국 | 제 1 8 호   |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2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1 9 호   |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20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0 호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29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1 호   | 「남동구 풍수해지인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38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2 호   | 「남동구 야생·육식동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49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3 호   |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57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4 호   |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69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5 호   |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77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6 호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96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7 호   |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10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8 호   |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21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2 9 호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원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36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3 0 호   |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66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3 1 호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76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3 2 호   |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86 |
| ○ 공 고   |           |                                                               |           |     |
| ○ 의회사무국 | 제 3 3 호   |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의 회 사 무 국 | 195 |

|                |  |  |  |  |  |  |  |  |
|----------------|--|--|--|--|--|--|--|--|
| <b>회<br/>람</b> |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678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 부설주차장에 정기주차 등록을 허용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기등록 자동차의 정의 및 관리방법 정비(안 제7조~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총무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총무과 / ☎  
032-453-2185, FAX 032-453-21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http://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가.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19조의3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
|----|--|
| 의안 |  |
|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3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구청 부설주차장에 정기주차 등록을 허용하여 상황에 맞는 유연한 주차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기등록 자동차 정의 및 관리방법 정비(안 제7조~제9조)

☐ 본 문 : “별첨”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7조 및 제19조의3

## 남동구 규칙 제 호

##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을 “(자동차의 정기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한다)이”를 “한다)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로, “월 정기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또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이하 “부제”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를 “정기등록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무원 등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20,000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40,000원으로 한다.
- ③ 정기등록 자동차의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으로 한다.
- ④ 정기등록 자동차는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로 한 명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자동차정보를 주차관제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정기등록 자동차를 관리한다.

⑤ 관리자는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또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이하 “부제”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월 정기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경하는”을 “따른 정기등록”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가 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월 정기자동차의 등록 등)</p> <p>① 제2조에 따른 공공청사 등에 상시 출입하는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무요원, 입주기관 및 단체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한정하여 월 정기자동차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또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이하 “부제”라 한다)에 참여하여야 한다.</p> <p>② 월 정기자동차의 1개월 주차요금은 20,000원으로 한다. 다만,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정기자동차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제7조(자동차의 정기등록 등) ①</p> <p>-----</p> <p>-----</p> <p>-----</p> <p>----- 한다)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 정기등록할 수 있다.</p> <p>② 공무원 등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20,000원으로 하고,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정기등록 주차요금은 1개월에 40,000원으로 한다.</p> <p>③ 정기등록 자동차의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으로 한다.</p> <p>④ 정기등록 자동차는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자동</p> |

<신 설>

<신 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생략)

② 부제에 참여하는 공무원 등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1일 주차요금은 2,000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부제 제외자는 부제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7조제1항에 따라 월 정기

차로 한 명당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자동차정보를 주차관제 시스템에 등록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정기등록 자동차를 관리한다.

⑤ 관리자는 주차공간 부족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공무원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른 승용차 요일제 또는 미세먼지 고농도계절 공공2부제(이하 “부제”라 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와 제8조제2항에 따라 감경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생략)

② 정기자동차 등록은 공무원 등이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자동차로 1대를 초과하여 등록할 수 없으며, 관리자는 신청인의 자동차번호를 주차관제시스템에 입력하여 별도의 주차권 발급 없이 정기자동차를 관리한다.

③ (생략)

④ 정기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 중 부제에 참여하는 자동차가 운휴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  
-----  
-----  
-----  
-----  
--.

1. ~ 8. (현행과 같음)

제9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정기등록 자동차가 부제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요금을 적용한다.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자료]

□ 주차장법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8호

##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지원사업(안 제3조)
- 예산지원(안 제4조)
- 지도·감독(안 제5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9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4명

☐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2조)
- 지원사업(안 제3조)
- 예산지원(안 제4조)
- 지도·감독(안 제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남동구 내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 체계 구축·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협의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4조(예산지원 등)에 따라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보조금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따른 남동구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예산이 연평균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므로, 비용추계자료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 [참고자료]

##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도 단위의 시·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도협의회”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단위의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군·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 건의
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
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

②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는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하되, 제2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중앙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관하여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제7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④ 중앙협의회, 시·도협의회 및 시·군·구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19호

##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사후관리 및 평가(안 제5조)
- 구의회 보고(안 제6조)
-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안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황규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7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황규진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4조)
- 사후관리 및 평가(안 제5조)
- 구의회 보고(안 제6조)
-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공개(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과의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 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구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구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평가)**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1. 주관부서, 대상기관, 체결일자, 주요내용, 추진상황, 변경상황 등
2. 업무제휴 및 협약 이행의 이행실적 및 평가결과

② 업무제휴 및 협약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는 연 1회 이상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료할 수 있다.

1. 업무제휴 및 협약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상대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유지가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 등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제휴 및 협약의 공개) 구청장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종료 등 주요내용을 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으로 인한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 종 원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0호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의사상자 지원(안 제5조)
- 의사상자 예우(안 제6조)
- 지원신청(안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오용환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0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오용환 의원  
 찬 성 자 : 장덕수 의원 외 4명

### ☐ 제안이유

-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적용범위(안 제3조)
- 의사상자 지원(안 제5조)
- 의사상자 예우(안 제6조)
- 지원신청(안 제7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남동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남동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의사상자 지원)**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공연 입장료 감면
4. 명절(설, 추석)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
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의사상자 예우)**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
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 소개

3. 남동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제7조 (지원신청)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남동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 제4조(지원사업)에 따른 구 시설 이용료 감면 및 위문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의사상자 지원 사업으로 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문화시설 사용료 면제 및 명절(설·추석) 위문 지원을 해주는 조항이 있으나 현재 남동구 거주 중인 의사상자는 10명으로 해당 면제 금액이 연평균 5천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므로 비용추계자료 작성을 생략함.

작성자 :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임희정

## [참고자료]

##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회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1호

##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보험목적물 및 지원대상·내용(안 제4조~제6조)
- 보험료 지급방법(안 제7조)
- 보험료 환수조치(안 제8조)
- 보험가입 홍보(안 제9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7,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반미선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8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반미선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 구민의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손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피해보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시행(안 제3조)
- 보험목적물 및 지원대상·내용(안 제4조~제6조)
- 보험료 지급방법(안 제7조)
- 보험료 환수조치(안 제8조)
- 보험가입 홍보(안 제9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없음”

### ☐ 참고자료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제7조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 제4조의2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서 정의하는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남동구민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그 외 용어의 뜻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豪雨)·강풍·풍랑·해일(海溢)·대설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4. “온실”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농가표준형 규격하우스’

및 ‘내재해형 규격하우스’ 중 농·임업용 목적의 온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 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관한 사항
2.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지원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3.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의 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남동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제7조(보험료 지급 방법)** ① 구청장이 보험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 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험사업자는 구청장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현황서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풍수해·지진재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보험료 지원) 규정에 따른 본인 부담 보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 시 재정 소요 예상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 제6조에 따라 풍수해·지진재해로 인한 남동구민의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가능하나, 2022년 5,600천원, 2023년에 17,000천원, 2024년 16,356천원으로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

작성자 : 안전교육국    안전총괄과장    유 영 도

[참고자료]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제7조(국가 등의 재정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보험목적물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보험료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금액을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지원금액을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현황서와 운영사업비 사용계획·결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가.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 나. 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 다. 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2호

##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성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유익한 교육 수행을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

#### 2. 주요 내용

○ 지원대상자 교육 이수 의무사항 및 신청서류 추가 신설  
(안 제3조제4호, 제5조제3항제3호)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유광희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1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김재남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성도 주 양육자로서 아이를 키우는 데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그 과정에서 아빠의 유익한 교육 수행을 통해 보다 더 내실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교육 이수 의무사항 및 신청서류 추가 신설  
(안 제3조제4호, 제5조제3항제3호)

☐ 본 문 : “별첨”☐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제5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증 1부(최초 신청 시)

제10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br>1. ~ 3. (생략)<br><u>&lt;신설&gt;</u>              | 제3조(지원 대상) -----<br>-----<br>-----.<br>1. ~ 3. (현행과 같음)<br><u>4. 육아휴직자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한 경우</u>                             |
| 제5조(지원 신청) ① · ② (생략)<br><br>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 2. (생략)<br><u>&lt;신설&gt;</u> | 제5조(지원 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br>③ -----<br>-----<br>--.<br>1. · 2. (현행과 같음)<br><u>3.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 이수 중 1부(최초 신청 시)</u><br><u>&lt;삭제&gt;</u> |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본 개정안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 시, 공공기관의 육아 프로그램 및 교육을 이수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작성자 :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참고자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1.]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3호

##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교육 및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법제상·행정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2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박정하 의원 외 6명

### ☐ 제안이유

-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순환경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 교육 및 홍보,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법제상·행정상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35조, 제4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순환경제사회 전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하여야 한다.

②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순환경제 사회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순환경제 문화가 널리 보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추진 등을 위하여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2항의 통계조사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

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 기반 구축)**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구민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 억제, 자원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남동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구청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으로 인한 비용발생요인 없으므로 미첨부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청소행정과장 박홍순

## [참고자료]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환경제”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를 말한다.
2. “순환경제사회”란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순환경제를 달성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는 사회를 말한다.
3.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
  -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4. “순환원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거된 물질 또는 물건의 전부·일부를 원형 그대로 또는 가공을 거쳐 순환이용할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순환자원”이란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거나 지정·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6.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산업”이란 폐기물을 최대한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연구·개발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業種)의 산업을 말한다.
8. “자원순환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폐기물을 순환이용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장비·설비 등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 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변경승인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순환경제 통계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3. 제13조에 따른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계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대상·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순환자원사용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나 기업에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그 포장 및 용기 등에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이하 “순환이용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순환이용센터를 설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2조(법제상·행정상 조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의 완화 등 필요한 법제상(法制上)·행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법령의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4호

##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5.2.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소속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일수를 10일에서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안 별표3)총무위원회 소관부서에 안전교육국 편입(안 제6조제2항제2호가목)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우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1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이용우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25.2.11.시행) 사항 반영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 주요내용

- 소속 공무원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경조사 휴일수를 10일에서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안 별표3)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배우자 출산휴가일수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로 본다.

##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3조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수                                 |
|-----|--------------------------------|------------------------------------|
| 결 혼 | 본인                             | 5                                  |
|     | 자녀                             | 1                                  |
| 출 산 | 배우자                            | 20<br>(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 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김 은 구 (서명)

## [참고자료]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7제2항 관련)

| 구분 | 대 상             | 일수                                   |
|----|-----------------|--------------------------------------|
| 결혼 | 본인              | 5일                                   |
|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20일<br>(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 입양 | 본인              | 20일                                  |
|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 3일                                   |

비 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5호

##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 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의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호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2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정재호 의원

찬 성 자 : 반미선 의원 외 2명

###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징계대상 위반 행위를 확대하여 지방의원 징계실효성을 제고하고, 그 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반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의원의 징계대상 행위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0조)

### ☐ 본 문 : “별첨”

###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4조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의결서)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 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 위반
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위반
4. 의원의 갑질행위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제10조 관련)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1. 품위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취소</li> <li>- 면허정지</li> </ul> </li> <li>○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미만 확정판결</li> </ul> </li> <li>○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li> </ul> </li> <li>○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li> <li>○ 성폭력, 성희롱</li> </ul> |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br/>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p> |
| 2. 청렴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세</li> <li>○ 면탈</li> <li>○ 금품수수</li> </ul>                                                                                                                                                                                                                                                                                  |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
| 3. 영리행위의 제한<br>(수의계약체결<br>제한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행위의 제한 위반</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ul> </li> <li>○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허위신고</li> </ul> </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
| 4. 겸직신고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겸직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지연등</li> </ul> </li> <li>○ 겸직 거짓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거짓신고</li> </ul> </li> <li>○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3조제6<br/>항 위반)</li> </ul>                                                                                 |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p>                                                                                                                    |
| 5. 겸직금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li> </ul>                                                                                                                                                                                                                                                                                              | <p>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br/>(상임위원회 변경)</p>                                                                                                                                   |
| 6. 갑질행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li> </ul>                                                                                                                                                                                                                                                                 | <p>경고, 공개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p>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기준은 별표 1을 준용한다. | 제10조(징계 등) -----<br>-----<br>-----<br>-----<br>-----.  |
| 1. <u>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u>                                                                      |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 유지의무 위반           |
| 2. <u>검직을 하는 것이 법 제43조 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업 권고를 거부</u>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 위반 |
| 3. <u>수익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u>                                                             | 3. <u>검직신고, 검직금지 관련 의무위반</u>                           |
| 4. <u>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u>                                                                        | 4. <u>의원의 갑질행위</u>                                     |
| 5. <u>의원이 구와 계약체결</u>                                                                                  | <삭 제>                                                  |
| 6. <u>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업권고를 거부</u>                                                                     | <삭 제>                                                  |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과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의회사무국 국장 김은구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참고자료]

---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

2023. 12.



국민권익위원회

## ■      목      차      ■

|                                         |           |
|-----------------------------------------|-----------|
| I. 추진배경 .....                           | 1         |
| II. 추진근거 및 평가체계 .....                   | 2         |
| III. 평가결과 .....                         | 3         |
| IV.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 10        |
| 1. 지방의원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확보 .....            | 10        |
| <b>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b>          | <b>18</b> |
| 3. 지방의원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 .....               | 30        |
| 4. 지방의원 국내 출장비 부담수령 방지 .....            | 40        |
| 5. 지방의원 업무추진비 투명성 제고 .....              | 45        |
| 6. 고문 공인회계사·세무사 무제한 연임 방지 .....         | 52        |
| 7.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관리 강화 .....               | 54        |
| 8. 지방공무원 출장비 부담수령 방지 .....              | 60        |
| 9. 공용차량 관리 강화 .....                     | 66        |
| 10.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공정성 확보 .....        | 72        |
| 11. 포상대상자 적격성 제고 .....                  | 79        |
| 12.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 .....                  | 84        |
| 13. 금고 지정·운영 투명성 제고 .....               | 89        |
| 14.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공정성 제고 .....           | 97        |
| 15.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 누수 차단 .....             | 104       |
| 16.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책임성 강화 .....           | 107       |
| 17. 구립예술단 채용·운영 공정성 제고 .....            | 109       |
| 18. 공공시설 내 매점 등 설치 우선계약자 선정기준 명확화 ..... | 117       |
| 19.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           | 121       |
| 20.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 .....          | 128       |
| 21. 우수기업인 지원대상 선정기준 명확화 .....           | 131       |
| 22.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 .....             | 134       |
| V. 조치사항 .....                           | 139       |

## 2. 지방의원 징계 실효성 제고

### ■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한다.

1. 검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부산광역시 남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부산광역시 남구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 거부

[별표2] 징 계 기 준(제9조 관련)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1. 검직신고 위반                   | ○ 검직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br>-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경고             |
|                              | ○ 검직 허위신고<br>- 미신고, 허위신고                                                 | 경고, 공개사과       |
|                              | ○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44조제2항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2. 영리거래 금지<br>(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 영리거래금지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br>- 신고지연, 변경신고를 게을리 한 경우 등 | 경고             |
|                              |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br>- 미신고, 허위신고                                       | 경고, 공개사과       |
|                              |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에 대한 윤리심사 또는 징계 규정 없음

###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⑥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기피·회피 없음

### 평가대상

###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회의규칙 등

## □ 평가기준 : 제재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평가항목        | 주요 검토 내용                                                                           |
|-------------|------------------------------------------------------------------------------------|
| 제재규정의 적정성   |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
|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 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

## □ 현황

-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조례로 정하고, 지방자치법·자치법규 위반행위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

- 윤리특별위는 윤리강령·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 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하고, 징계·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위임

-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회의 규칙 등에 지방의원 의무사항·윤리심사·징계·윤리심사자문위에 관한 사항 규정

#### < 관련 법령 >

##### ■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8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99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제95조제1항을 위반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지방의회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의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제101조(징계에 관한 회의규칙)** 징계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 문제점

① 지방의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윤리강령 등에 관한 조례  
에 징계 규정이 없어 징계 실효성 확보가 곤란

- 대구 동구의회 등은 윤리심사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징계대상이 되는 위반행위가 불명확

- 부산 남구의회 등은 겸직신고 위반 등 일부만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는 징계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아 윤리심사 결과에 따른 징계 회부가 불분명

- ② 징계대상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없거나 미흡해 위반한 행위 및 그 정도에 따른 징계양정의 적정성·일관성 확보가 곤란
- 서울 강서구의회 등은 위반행위별 징계기준이 전혀 없거나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는 징계기준을 두지 않아 부실 징계 또는 정치 논리로 좌우될 우려

## □ 개선방안

- ①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조례에 징계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징계규정 마련(대구 동구의회 등 16개 구의회)
  -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가 징계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지자체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위반행위를 징계대상 행위로 추가(부산 남구의회 등 30개 구의회)
- ② 윤리심사 대상 행위\*별 징계기준 마련 또는 보완(서울 강서구 의회 등 48개 구의회)
- \* 각 자치구의회는 윤리실천규범 관련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의원 준수행위
- ③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또는 회의규칙에 윤리심사자문위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서울 구로구의회)
- ④ 윤리심사자문위의 공정성·중립성을 위해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대한 연임제한 규정 마련(대전 중구의회, 서울 강서구의회)

- 연임제한 규정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규칙 정비(서울 중구의회)

※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규칙) 2년, 임기만료시 재위촉할 수 있음 / (회의규칙) 위촉된 날로부터 2년

⑤ 임기 중이라도 부적격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해촉 규정 마련(부산 서구의회 등 45개 구의회)

⑥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마련 또는 보완(광주 광산구 등 59개 구의회)

⑦ 민간위원 위촉 시 예외적으로 구 소속 공무원, 의원 또는 정당 당원 참여를 허용하도록 한 준용 규정 정비(서울 관악구·영등포구의회)

※ 서울시 관악구·영등포구의회는 행동강령 자문위 구성·운영 규정 준용

## [타 기관 우수사례]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제10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제4조,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익계약 제한 위반
3. 검직신고, 검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
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 제4조(윤리강령), 제5조(윤리실천규범)

## [별표 1] 징계기준(제10조 관련)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1. 품위유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주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허취소</li> <li>- 면허정지</li> </ul> </li> <li>○ 범법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고 미만 확정판결</li> </ul> </li> <li>○ 각종 비리 관련 범죄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리행위로 인한 벌금 이하 확정판결</li> </ul> </li> <li>○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li> <li>○ 성폭력, 성희롱</li> </ul> | <p>공개사과, 출석정지<br/>경고, 공개사과<br/>공개사과, 출석정지</p> <p>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 2. 청렴의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세</li> <li>○ 면탈</li> <li>○ 금품수수</li> <li>○ 인사청탁, 이권개입 등 금지 위반</li> </ul>                                                                                                                                                                                                                                                                                             | <p>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 3. 영리거래 금지<br>(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리거래금지 위반</li> <li>○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ul> </li> <li>○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신고, 허위신고</li> </ul> </li> <li>○ 계약체결 제한 위반</li> <li>○ 관리인 검직 사임권고 불이행</li> </ul>                                             |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 4. 검직신고 위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직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li> </ul>                                                                                                                                                                                                                                                                                                                          | <p>경고</p>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li> <li>○ 겸직 허위신고</li> <li>- 미신고, 허위신고</li> <li>○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li> </ul> | 경고, 공개사과<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5. 겸직금지            |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 공개사과, 출석정지<br>(상임위원회 변경)   |
| 6.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 ○ 의정활동과 관련 찬조금 수수                                                                                                                                |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
| 7. 회피의무            | ○ 회피의무 위반                                                                                                                                        | 경고, 공개사과                   |
| 8. 업무추진비           | ○ 업무추진비 공개 위반                                                                                                                                    | 공개사과                       |
| 9. 회의불참            | ○ 회기당 3회 이상                                                                                                                                      | 경고, 공개사과                   |

### ■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제88조(임기)**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0조(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6호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8조제1항)
-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 및 징계취소 확정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점원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3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서점원 의원

찬 성 자 : 이철상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 및 여비뿐만 아니라 월정수당 또한 지급을 제한(안 제8조제1항)
- 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2항)
- 법원판결에 의하여 무죄 및 징계취소 확정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소급 지급하는 규정 신설(안 제8조제3항)

### ☐ 본 문 : “별첨”

### ☐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40조, 제100조
-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조 및 제4조”를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의정활동비”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br/>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 <p>제8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p> <p>①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br/>----. &lt;단서 삭제&gt;</p> <p>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p> <p>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p> |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상기 규정과 같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작성자 : 의회사무국 국장 김은구

## [참고자료]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참고자료]

세상의 나침반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

##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

2022. 12.

# **목 차**

|                                       |           |
|---------------------------------------|-----------|
|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 1         |
| Ⅱ. 제도현황 .....                         | 2         |
| Ⅲ. 문제점 .....                          | 5         |
| 1. 지방의원 비위행위 빈발 .....                 | 5         |
| 2. 지방의원 징계제도 부실 .....                 | 7         |
| 3.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전액 지급 .....        | 8         |
| 4. 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 지급 .....           | 9         |
| Ⅳ. 개선방안 .....                         | 11        |
| 1. 지방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정비 .....        | 11        |
| <b>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b>    | <b>11</b> |
| 3. 지방의원 구속 시 의정비 제한 .....             | 13        |
| Ⅴ. 조치사항 .....                         | 14        |
| [붙임1] 지방의원 구속 및 의정비 지급현황 .....        | 15        |
| [붙임2]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등 지급제한 법안 현황 ..... | 16        |

### 3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전액 지급

#### □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제한 미흡

- 243개 지방의회 중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를 제한하도록 규정한 곳은 4곳\*(1.6%)에 불과,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모두 의정비 제한 없음

\* (의정활동비 제한) 서울 광진구, 서울 영등포구, 광주 서구  
(월정수당 제한) 서울 강동구

-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 전액 지급(상기 4곳 제외)  
- 반면, 국회의원·일반공무원은 징계가 있는 경우 급여 감액

○ 국회의원: 출석정지 시 1/2 감액,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는 1개월분 / 출석정지는 3개월분 전액 감액

○ 국가·지방공무원: 강등(3개월분 연봉월액 감액), 정직(전액 감액), 감봉(40% 감액)

#### □ 출석정지 관련 의정비 지급 현황

- 출석정지 97건\*(7~8기)의 평균 기간은 25.1일이며, 해당 기간에 총 2억 7,230만원 지급(1건당 280.7만원)

\* 음주운전 9건, 뺑소니 2건, 성추행·성희롱 등 성 비위 9건, 갑질 7건, 검직·영리행위 10건 등 포함

< 출석정지 관련 의정비 지급 현황 (권익위 실태조사) >

| ■ (7기) '14.7월~'18.6월 / (8기) '18.7월~'22.6월 |               |               |        | ('22.7.31. 기준, 단위: 건, 원) |            |             |
|-------------------------------------------|---------------|---------------|--------|--------------------------|------------|-------------|
| 구분                                        | 출석정지·의정비 감액   |               |        | 출석정지(③) 기간의 의정비          |            |             |
|                                           | 전체            | 출석정지          | 의정비 감액 | 합계                       | 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 7기                                        | 60            | 31            | -      | 84,855,006               | 30,074,097 | 54,780,909  |
| 8기                                        | 131           | 66            | -      | 187,478,734              | 68,743,933 | 118,704,771 |
| 합계                                        | 191<br>(100%) | 97<br>(50.8%) | -      | 272,303,710              | 98,818,030 | 173,485,680 |

※ 서울 강동구는 출석정지 2건이 있었으나 조례 개정 이전으로 월정수당 미제한

## IV. 개선방안

### 2 지방의원 징계처분 시 의정비 감액

#### □ 출석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

- 본회의·위원회에 일정 기간 참석할 수 없는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질서유지 위반에 따른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경우도 의정비 감액

| 구분                | 의정비 지급 제한(예시)                            |
|-------------------|------------------------------------------|
| 출석정지<br>▶ 일반적인 경우 |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 1/2 감액<br>(⇨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 |

< 예시: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

| 현 행                                   | 개 선 안(예시)                                                                                                         |
|---------------------------------------|-------------------------------------------------------------------------------------------------------------------|
| 제○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br><br>< 신설: 출석정지 > | 제○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① (생략)<br><br>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7호

##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9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 (장덕수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3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장덕수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남동구에 서식하는 다양한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그 서식지를 보전하여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제6조)
- 서식지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제9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 제55조, 제61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동구에서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과 그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에 환경분야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생물 보호 및 그 서식지 보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야생생물 보호와 서식지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환경조사)**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자연생태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자연환경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상황
2. 식생 현황
3. 보호 야생생물, 멸종위기종,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 현황
4.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연환경조사원)** ① 구청장은 자연환경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생태환경 활동가 및 자연환경조사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자연환경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조사원에게 그 조사의 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조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대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자연환경보전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정부에서 허가한 관련학회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4.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지역에서 조사 업무 등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기관·단체 등

**제7조(서식지 보호)** ① 구청장과 구민은 서식지 보호가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

1.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등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주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야생생물의 보호
  2.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자산의 보전
  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생태계 교란 생물 방제 필요 조치 등
  4. 자연환경 보전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연환경 보전 및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육·홍보)**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생태계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남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한 조례 제8조(자연환경 보전 및 보호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등)에 따라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야생생물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연 평균 1천만원 미만 소요 예상되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기에 미첨부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환경보전과장 신현천

[참고자료]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자연환경보전법

**제30조(자연환경조사)**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55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①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다음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연환경의 실태 및 보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2. 훼손된 생태계나 종의 복원, 소생태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영상물의 제작 및 출판 등 자연교육과 홍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비,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0. 4., 2013. 3. 22., 2020. 5. 26.>

②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8호

##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안 제7조~제8조)
- 징계 및 인사처분 (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10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11조~제12조)
- 허위신고 및 비밀유지, 실태조사 (안 제13조~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남동구의회의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연주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4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이연주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8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의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의장의 책무 (안 제3조)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 (안 제5조~제6조)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치 (안 제7조~제8조)
- 징계 및 인사처분 (안 제9조)
-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안 제10조)
- 피해 직원 등의 보호 및 불이익 조치 금지(안 제11조~제12조)
- 허위신고 및 비밀유지, 실태조사 (안 제13조~제15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76조의3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공무원 행동강령」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구성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공무원 등”이란 의회 소속 공무원과 의회에 배치된 청원경찰, 청사 환경미화 근로자를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남동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 또는 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내용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는 자는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날인을 받거나,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녹취하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상담 및 조사를 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 전문가 등) 및 외부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징계 및 인사 처분 등)** ① 의장은 제8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의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판단된 경우,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남동구의회 윤리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의 관리자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기간 및 괴롭힘 발생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심리상담 치료 및 회복
2.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문
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허위신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14조(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1. 상담 직원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는 사람
2.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3.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②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실태조사)**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남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참고자료]

##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0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소속 지방의회의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그 지방의회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 지방의회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轉嫁)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29호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제4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출장계획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예산 편성·집행 및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안 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유경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5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이유경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3명

### □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외유성 위주의 연수 실시 및 예산 사적 남용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의회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 허가권자 및 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제4조)
-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출장계획서 수립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예산 편성·집행 및 징계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안 제15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표 [별표]
-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작성요령 [별지 제2호서식]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별첨”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남동구의회 규칙 제 호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남동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기타 남동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남동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남동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야 한다.

⑧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남동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렴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

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남동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국외출장 업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남동구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남동구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심사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4조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별표]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 항목                                         | 심사기준                                                | 예 | 아니오 |
|--------------------------------------------|-----------------------------------------------------|---|-----|
| 출장의<br>필요성                                 |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   |     |
|                                            |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   |     |
|                                            |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   |     |
| 지방의정과의<br>관련성<br>(국제 교류,<br>초청 목적출장<br>제외) |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   |     |
|                                            |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   |     |
|                                            |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     |
| 방문국과<br>방문기관의<br>타당성                       |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   |     |
|                                            |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   |     |
|                                            |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   |     |
|                                            |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   |     |
|                                            |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   |     |
|                                            |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   |     |
| 출장자의<br>적합성                                |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   |     |
|                                            |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   |     |
|                                            |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   |     |
| 출장기간 및<br>시기의 적시성                          |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   |     |
|                                            |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   |     |
|                                            |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   |     |
| 출장경비의<br>적정성                               |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   |     |
|                                            |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   |     |
|                                            |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   |     |
| 감염병 및<br>안전사고<br>예방조치 적정성                  |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   |     |
|                                            |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     |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별지 제1호서식] (제5조 관련)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1. 출장개요

|              |                     |    |    |    |    |         |      |
|--------------|---------------------|----|----|----|----|---------|------|
| 출장목적         |                     |    |    |    |    |         |      |
| 출장동기<br>및 내용 |                     |    |    |    |    |         |      |
| 출장기간         | . . . ~ . . . ( 일간) |    |    |    |    |         |      |
| 출 장 국        |                     |    |    |    |    |         |      |
| 출 장 자        | 소속                  | 직급 | 성명 | 성별 | 연령 | 출 장 경 비 |      |
|              |                     |    |    |    |    | 금 액     | 부담기관 |
|              | 계                   |    | 명  |    |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출장일정

| 월 일<br>(요일) | 출발지 | 도착지 | 방문기관 | 업 무 내 용 | 접촉예정인물<br>(직책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 연 번 | 소 속 | 직 급 | 성 명 | 업 무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출장경비

| 성명 | 계 | 체재비 |    |     | 항공운임 | 준비금 | 기타 |
|----|---|-----|----|-----|------|-----|----|
|    |   | 일비  | 식비 | 숙박비 |      |     |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출장효과

## 5. 출장 주요정보 요약

| 공무국외출장 주요정보요약   |       |  |
|-----------------|-------|--|
| 출장명             |       |  |
| 출장자 명단          | 의원    |  |
|                 | 직원    |  |
|                 | 기타    |  |
| 출장기간            |       |  |
| 방문국가            |       |  |
| 공식방문기관<br>(접촉자) |       |  |
| 여행경비            | 체재비   |  |
|                 | 준비금   |  |
|                 | 항공료   |  |
|                 | 차량임차료 |  |
|                 | 통역비   |  |
|                 | 물품구입  |  |
|                 | 기타비용  |  |
|                 | 총 계   |  |

| 비용 상세정보                       |                                                |    |    |    |    |      |      |  |
|-------------------------------|------------------------------------------------|----|----|----|----|------|------|--|
| 총 여행경비<br>(A+B+C<br>+D+E+F+G) |                                                |    |    |    |    |      |      |  |
| 체재비<br>(A=a+b+c)              |                                                |    |    |    |    |      |      |  |
|                               | 적용환율                                           |    |    |    |    |      |      |  |
| 구분(금액)                        | 급지                                             | 호수 | 상한 | 일수 | 인원 | 산출금액 | 실지금액 |  |
| 일비<br>(a)                     |                                                |    |    |    |    |      |      |  |
|                               |                                                |    |    |    |    |      |      |  |
|                               | 차량임차 및 공용차량 이용 시 일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    |    |    |    |      |      |  |
| 식비<br>(b)                     |                                                |    |    |    |    |      |      |  |
|                               |                                                |    |    |    |    |      |      |  |
|                               | 기내식 취식이나 식사 제공 시 식비를 감액하여야 함을 확인합니다. [ O / X ] |    |    |    |    |      |      |  |
| 숙박비<br>(c)                    |                                                |    |    |    |    |      |      |  |
|                               |                                                |    |    |    |    |      |      |  |
|                               | 할인정액(85%) 지급이 아니면 정산의무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 O / X ]   |    |    |    |    |      |      |  |
| 준비금<br>(B)                    | 지급사유:                                          |    |    |    |    | 금액:  |      |  |
| 항공료<br>(C)                    | 이용구간:                                          |    |    |    |    | 금액:  |      |  |
| 차량임차료<br>(D)                  | 이용일수:<br>이용차량:                                 |    |    |    |    | 금액:  |      |  |
| 통역비<br>(E)                    | 이용내역:                                          |    |    |    |    | 금액:  |      |  |
| 기념품 등<br>물품구입<br>(F)          | 구입목적:<br>물 품 명:                                |    |    |    |    | 금액:  |      |  |
| 기타비용<br>(G)                   | 지급사유:                                          |    |    |    |    | 금액:  |      |  |

[별지 제2호서식] (제12조제1항 관련)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

###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 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 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 (1) 겉표지 예시

## &lt;보고서&gt;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여 행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 소속위원회 | 성 명 | 비 고 |
|-------|-----|-----|
|       |     |     |

6.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 심사위원회에서 기재

## 3. 첨부자료

## ○ 출장계획서 및 회의록

※ 부결되었다가 재의결된 경우 부결된 심사위의 회의록도 포함

## ○ 실제 출장 수행 출장 주요정보 요약(별지 제1호 서식의 5. 활용)

※ 출장자 취소, 현지 일정변경 등에 따른 출장, 비용 변동을 반영

##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 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

※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합동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개별 의원별 보고서를 포함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김은구

## [참고자료]

## □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개정권고) 표준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지방의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당해 지방의회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된 ○○시·도(○○시·군·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시·도의회 9인(시·군·구 의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4. 00시·도(00시·군·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 ⑤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 및 게시)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 전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출장계획서의 제출 수립 및 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지방의회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하여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기준)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계획은 이동 등 출장일정을 감안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또는 의사담당관 등)이 된다.

③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간사는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록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군·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지방의회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에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

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허가권자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지방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 □ 남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동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남동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남동구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의원 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의원의 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신분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⑧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심사기준) 국외출장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회의)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무국 국외출장 업무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8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장보고서 제출) ①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0호

##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정원도시의 조성, 구민 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정원문화의 조성 등,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4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6명

### ☐ 제안이유

-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정원도시의 조성, 구민 복지의 증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정원문화의 조성 등,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제10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조의18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동구가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마을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

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 ① 구청장은 도심 내에 구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 복지의 증진)**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
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
8. 정원 캠페인의 추진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도심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
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
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

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10조(마을정원사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정원문화 진흥·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안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및 지원), 안 제9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인증)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에 해당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의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증진을 위한 권고의 형식으로 현재로서는 비용추계가 어려우며, 향후 안 제8조에 의거 정원문화의 확산 장려를 위한 개인·법인·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산 규모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공원녹지과장 박호진

[참고자료]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의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18조의18(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의 활용)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수목원 또는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1호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회의 방청 제한 사유 고지 및 중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활동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방청의 제한 사유 고지 규정 마련(안 제79조)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 마련(안 제82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3,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광희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76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유광희 의원

찬 성 자 : 서점원 의원 외 2명

☐ 제안이유

- 남동구의회 회의 방청 제한 사유 고지 및 중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의회 활동의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방청의 제한 사유 고지 규정 마련(안 제79조)
- 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회의 중계 및 공개 규정 마련(안 제82조)

☐ 본 문 : “별첨”☐ 신 · 구조문대비표 : “별첨”

남동구 규칙 제 호

##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장의 제목 “질서”를 “질서 및 중계방송”으로 한다.

제79조의 제목 “(방청의 제한)”을 “(방청의 제한 및 고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의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84조부터 제86조까지를 각각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로 하고, 제83조를 제84조로 하며, 제82조를 제83조로 한다.

제83조의2를 제84조의2로 한다.

제8장에 제82조 및 제82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2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한다.

- 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82조의2(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으며,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사 공개 영상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82조 앞의 “제9장 징계”를 삭제한다.

제8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장 징계

제84조(종전의 제83조)제1항 중 “제8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82조제2항”을 “제83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u>제8장 질서</u></p> <p>제79조(<u>방청의 제한</u>) ① ~ ③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 <p><u>제8장 질서 및 중계방송</u></p> <p>제79조(<u>방청의 제한 및 고지</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의장이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p> <p>제82조(<u>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중계방송</u>)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의회 의사를 의회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중계방송한다.</p> <p>②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청문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한다.</p> <p>제82조의2(<u>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및 대상</u>)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보존하여</p> |



|                                                                                                     |                                                      |
|-----------------------------------------------------------------------------------------------------|------------------------------------------------------|
| 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br>-----<br>-----.<br>-----<br>-----<br>-----. |
| <u>제83조의2</u> ~ <u>제86조</u> (생략)                                                                    | <u>제84조의2</u> ~ <u>제87조</u> (현행 제83조의2부터 제86조까지와 같음) |

(별지 제2호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으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의회사무국장 김 은 구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2호

##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구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육은아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5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육은아 의원  
찬 성 자 : 전용호 의원 외 5명

### ☐ 제안이유

- 국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지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제7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제2조, 제44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남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
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
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음주운전 예방 교육
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
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
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지원 등)의 규정에 따라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의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 지원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 [참고자료]

☐ 도로교통법

## 제2조(정의)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6.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제44조·제45조·제54조제1항·제148조·제148조의2 및 제156조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2조(정의)

2.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

## 공 고

남동구의회사무국 공고(입법예고) 제2025-33호

##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3. 28.

### 남 동 구 의 회 의 장

#### 1.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관계 기관 협의 등(안 제4조)
-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안 제6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25. 3. 28. ~ 4. 4.

####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의회 의장

(참조 : 남동구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의회 / ☎ 453-5034,  
FAX 453-502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조례안 : 별첨

※ 이 조례안은 남동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namdong.go.kr>)에 게재  
되어 있습니다.

##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은숙 의원 발의)

|          |      |
|----------|------|
| 의안<br>번호 | 3086 |
|----------|------|

발의년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 의 자 : 김은숙 의원

찬 성 자 : 이용우 의원 외 4명

### ☐ 제안이유

-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관계 기관 협의 등(안 제4조)
- 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안 제6조)

### ☐ 본 문 : “별첨”

### ☐ 참고자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3조, 제4조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4조
- 「모자보건법」 제2조

남동구 조례 제 호

## 남동구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다. 70세 이상의 고령자

라. 임산부 및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2. “교통약자 탑승차량”이란 교통약자가 탑승한 차량을 말한다.

3. “배려주차구역”이란 교통약자 탑승차량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공시설”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단체에서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5.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보호와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 등을 위해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장려·확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마트, 병원, 은행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 ① 구청장은 남동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와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다.

**제5조(배려주차구역 대상시설)** ① 구청장이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남동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2.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시설로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배려주차구역 바닥면에는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임산부 또는 영유아 탑승차량을 위한 주차장이나, 여성 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 제6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 공영주차장 내 교통약자 배려주차구역 표시 요청 시 주차구역 표지 설치 비용 발생

###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정창범

## [참고자료]

##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 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 모자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妊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4.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5. “미숙아(未熟兒)”란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7.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한다.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삭제
10. “산후조리업(産後調理業)”이란 산후조리 및 요양 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이하 “산후조리원”이라 한다)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11. “난임(難妊)”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12. “보조생식술”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자연적인 생식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의료행위로서 인간의 정자와 난자의 채취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 검 토 구 분 |                                                                                                                          | 유    | 무    |
|---------|--------------------------------------------------------------------------------------------------------------------------|------|------|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br>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br>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br>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 여부<br>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br>6. 그 밖의 문제점 |      |      |
| 부서별 의견  |                                                                                                                          |      |      |
| 협의개요    | 부 서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                                                                                                                          |      |      |